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1635
----------	------

2024년 2월 29일
보건복지위원회

I. 심사경과

-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4년 2월 5일 서울특별시장
- 회부일자 : 2024년 2월 7일
- 상정일자 : 제322회 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2024년 2월 28일 상정·의결(원안 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1. 제안이유

- 서울 직장 성희롱·성폭력 예방센터 운영이 종료('23. 8. 31.)
됨에 따라 근거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서울 직장 성희롱·성폭력 예방센터 설치, 기능, 운영비 지

- 원 및 정산, 지도·점검 등 규정 삭제(안 제21조~제24조)
- 문구 등 수정(안 제10조, 제1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여성폭력방지기본법」

나. 예산조치 : 협의완료 / 해당없음

다. 협의사항

-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신설·강화되는 규제없음
- (2) 예산담당관(비용추계):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제출
- (3)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평가제외
- (4) 양성평등담당관(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없음
- (5) 시민협력과(공공갈등진단): 갈등없음
- (6) 조직담당관(위원회 신설): 해당없음
- (7)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본부·국 검토의견:
해당없음

라. 기타

- (1) 입법예고 (2023. 11. 9.~11. 29.) 결과: 의견없음
- (2) 신·구조문 대비표: 참조

Ⅲ.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주병준)

1 개정안의 개요

- 동 개정안은 서울 직장 성희롱·성폭력 예방센터 운영이 2023년 8월 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조례상에서 해당 시설의 설치·운영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 개요>

- 설립근거 :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1조
- 위치·규모 : 동작구 여의대방로54길 18 서울여성플라자 3층, 267㎡
- 수탁기관 : (사)젠더교육플랫폼 효재
- 인 력 : 3개팀 10명(센터장1, 팀장3, 팀원 6) ※현원 7명
- 위탁기간 : '20. 6. 8.~'23. 8. 31(3년3월)
- 주요기능 : 직장(소규모 사업장) 내 성희롱·성폭력 피해 예방 및 지원
- '23년 예산 : 810백만원(민간위탁금)

2 주요사항 검토

- 서울 직장 성희롱·성폭력 예방센터 위탁종료에 따른 근거규정 삭제 (안 제21조~ 24조 삭제)
 - 서울 직장 성희롱·성폭력 예방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8년 미투운동으로 성희롱 문제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서울시가 발표한 성희롱·성폭력 없는 성평등 도시 서울 추진계획¹⁾에 따라 「서울#withU 프로젝트」 일환

으로 그 설립이 추진되었음.

- 그 후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거쳐 2020년 6월 8일 성희롱 피해로부터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체계적인 통합 지원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센터가 설치되었음.
- 센터의 주요기능은 아래와 같음.

서울 직장 성희롱·성폭력 예방센터 사업범위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과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2조(센터 기능) 센터의 주요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희롱·성폭력 사각지대 예방계획 수립 및 시행 2. 소규모 사업장의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및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컨설팅 3. 성희롱·성폭력 피해 지원기관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성희롱·성폭력 관련 지식정보 시스템 구축 및 공유 5. 성희롱·성폭력에 관해 시민인식 및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홍보·캠페인 6. 그 밖에 성희롱·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2020년 6월 8일부터 2023년 8월 31일까지 3년 3개월간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되었으며, 직장내 성희롱·성폭력 해결을 위한 대응 체계가 부족한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교육 및 컨설팅을 진행하고 ‘성희롱 없는 안심일터 서울’ 캠페인을 통해 성평등한 조직 문화 확산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1) 여성정책담당관-5272(2018.3.21.), 성희롱·성폭력 없는 성평등 도시 서울 추진계획,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49호, 서울특별시 여성정책담당관, pp. 24-25.

<서울 직장 성희롱·성폭력 예방센터 운영성과>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찾아가는 교육	20개소	71개소	81개소	47개소
조직관리 컨설팅	20개소	26개소	26개소	2개소
직장내 성희롱 피해자 지원	16건	26건	25건	
대시민 온·오프라인 캠페인	18회	15회	10회	2회

○ 다만 2022년 기준 서울 소재 기업 중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전체의 97%로 약 100만개에 달하나²⁾ ‘22년도 교육이수기관은 81개소에 그치고 그 중 민간기업 비중은 56%로 45개소 그치는 등 센터의 운영성과가 부진하였음.

- ‘성희롱·성폭력 예방’이라는 단일 목적을 민간위탁 방식으로 수행함으로써 교육을 이수한 사업에 대한 인센티브 등이 부재한 상황에서 교육대상 사업장의 자발적인 참여를 끌어내는 데는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짐.

<30미만 소규모 사업장 대상 직장내 성희롱·성폭력 교육 실적>

구분	‘20년 8월~12월	‘21년	‘22년
교육 이수기관	20개소	71개소	81개소
민간기업 비중	6개소(30%)	49개소(69%)	45개소(56%)

○ 이에 서울시는 서울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피해자 지원사업 개선을 위한 관계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조직문화 개선의 통합적 관점 접근 및 서울시 차원의 기업참여 제고방안이 필요하

2) 통계청, 서울특별시·산업·종사자규모별 사업체수, 종사자수(‘20)

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2023년 8월 31일자로 동 사업의 민간위탁을 종료하기로 결정하였음.

- 위탁운영 종료에 따라 센터 사무 중 예방교육·컨설팅·안심일터 조성 사업은 기존 조직문화 개선 및 일·생활 균형 등과 연계하여 통합지원을 하기 위해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일·생활균형지원센터로 이관하고, 피해자 지원은 기존 성폭력상담소 17개소에서 수행할 예정임.
- 개정안은 서울 직장 성희롱·성폭력 예방센터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위탁사무를 종료하고 센터 설치 근거를 조례에서 삭제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1조(서울 직장 성희롱·성폭력 예방센터 설치) 시장은 성희롱·성폭력 피해로부터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성희롱·성폭력 보호 시스템의 사각지대에 있는 시민 보호를 위한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하여 서울 직장 성희롱·성폭력 예방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삭 제>
제22조(센터 기능) 센터의 주요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삭 제>

1. 성희롱·성폭력 사각지대 예방계획 수립 및 시행
2. 소규모 사업장의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및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컨설팅
3. 성희롱·성폭력 피해 지원기관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성희롱·성폭력 관련 지식정보 시스템 구축 및 공유
5. 성희롱·성폭력에 관해 시민 인식 및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홍보·캠페인
6. 그 밖에 성희롱·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3조(운영비 지원 및 정산)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을 받은 경우 센터장은 시장에게 지원받은 경비 등에 대하여 정산·보고하여야 한다.

<삭 제>

제24조(지도·점검 등) 시장은 센터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삭 제>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라 수탁기관에 대하여 지도·점검 등을 할 수 있다.

3 종합 의견

- 동 개정안은 서울 직장 성희롱·성폭력 예방센터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되면서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센터의 설치 목적인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해당 위탁사무를 종료하였는 바, 그 후속조치로 센터의 설치·운영 근거를 조례에서 삭제하려는 것으로 법적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없음」

VI. 심사결과 : 원안 가결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635
----------	------

제출년월일 : 2024년 2월 5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서울 직장 성희롱·성폭력 예방센터 운영이 종료('23. 8. 31.)됨에 따라 근거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서울 직장 성희롱·성폭력 예방센터 설치, 기능, 운영비 지원 및 정산, 지도·점검 등 규정 삭제(안 제21조~제24조)
- 나. 문구 등 수정(안 제10조, 제13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여성폭력방지기본법
- 나. 예산조치: 협의완료 / 해당없음
- 다. 협의사항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신설·강화되는 규제없음

- (2) 예산담당관(비용추계):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제출
- (3)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평가제외
- (4) 양성평등담당관(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없음
- (5) 시민협력과(공공갈등진단): 갈등없음
- (6) 조직담당관(위원회 신설): 해당없음
- (7)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본부·국 검토의견:
해당없음

라. 기타

- (1) 입법예고 (2023. 11. 9.~11. 29.) 결과: 의견없음
- (2)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 작성자 : 여성가족정책실 양성평등담당관 이소민(☎2133-5034)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때에는(부위원장)”을 “때에는 부위원장”으로, “때에는)”을 “때에는”으로 한다.

제13조 본문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생략)</p> <p>②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제13조(위원수당)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21조(서울 직장 성희롱·성폭력 예방센터 설치) 시장은 성희롱·성폭력 피해로부터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성희롱·성폭력 보호 시스템의 사각지대에 있는 시민 보호를 위한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하여 서울 직장 성희롱·성폭력 예방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p> <p>제22조(센터 기능) 센터의 주요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때에는 부위원장----- ----- ----- ----- ----- 때에는 ----- -----.</p> <p>제13조(위원수당) ----- ----- 범위----- ----- ----- -----.</p> <p><삭 제></p> <p><삭 제></p>

1. 성희롱·성폭력 사각지대 예방 계획 수립 및 시행
2. 소규모 사업장의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및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컨설팅
3. 성희롱·성폭력 피해 지원기관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성희롱·성폭력 관련 지식정보 시스템 구축 및 공유
5. 성희롱·성폭력에 관해 시민인식 및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홍보·캠페인
6. 그 밖에 성희롱·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3조(운영비 지원 및 정산)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을 받은 경우 센터장은 시장에게 지원받은 경비 등에 대하여 정산·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지도·점검 등) 시장은 센터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라 수탁기관에 대하여 지도·점검 등을 할 수 있다.

<삭 제>

<삭 제>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비용추계서 제출 범위에 해당하지 않음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 ① 의원·위원회·시장·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첨부 사유

-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 설치 근거 규정 등을 삭제하는 것으로 개정에 수반되는 별도 비용 발생 요인 없음

4. 작성자

- 양성평등담당관 주무관 이소민(2133-5034)